

#붙임1.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광안센텀 비스타 동원」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I	공급개요
---	------

- 위 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971번지 외 157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9층 7개동 총 525세대 중 일반분양 208세대
- 입주시기 : 2027년 09월 예정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 세대수 : 총 208세대 중 21세대

주택형	약식표기	세대별 계약면적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 세대수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배정	예비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059.9823A	59A	59.9823	22.5015	82.4838	38.4964	120.9802	5	25
059.9823B	59B	59.9823	22.5015	82.4838	38.4964	120.9802	3	15
059.9782C	59C	59.9782	23.0685	83.0467	38.4938	121.5405	3	15
084.9620A	84A	84.9620	30.1148	115.0768	54.5283	169.6051	8	40
084.9413B	84B	84.9413	30.9086	115.8499	54.5150	170.3649	2	10

※ 상기 면적은 본 아파트의 사업계획(변경)승인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기)으로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니 청약 신청 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유형별 배정 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59A		59B		59C		84A		84B		합계		
		배정	예비	배정	예비	배정	예비	배정	예비	배정	예비	배정	예비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부산광역시	1	5	1	5	1	5	2	10	-	-	5	25
		울산광역시	-	-	-	-	1	5	1	5	-	-	2	10
		경상남도	-	-	-	-	-	-	1	5	1	5	2	10
	국가유공자		2	10	2	10	-	-	1	5	-	-	5	25
	장기복무 제대군인		-	-	-	-	-	-	1	5	-	-	1	5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5	-	-	-	-	1	5	1	5	3	15
	중소기업 근로자		1	5	-	-	1	5	1	5	-	-	3	15
합계		5	25	3	15	3	15	8	40	2	10	21	105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6조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 대하여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기관추천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며, 같은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II	공급일정
----	------

구분	(예정)일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	2024.09.26.(목)	일간신문, 당사 홈페이지
건본주택 오픈	2024.09.27.(금)	부산 해운대구 우동 1522
특별공급 청약	2024.10.07.(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인터넷청약
당첨자 발표	2024.10.16.(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개별조회
당첨자 서류접수	2024.10.18.(금)~2024.10.23.(수)	당사 건본주택
계약체결	2024.10.28.(월)~2024.10.30.(수)	당사 건본주택(10시~17시)

※ 상기 공급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분양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특별공급 자격 및 유의사항

■ 신청자격

구분	내용												
공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처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td> <td style="text-align: center;">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 <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 <td>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body> </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특별공급 1회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3.11.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에 의거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되어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 style="text-align: center;">그 밖의 광역시</th> <th style="text-align: center;">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8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구분	해당기관(추천기관)	관련법규
장애인 (청약통장 불필요)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울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국가유공자 (청약통장 불필요)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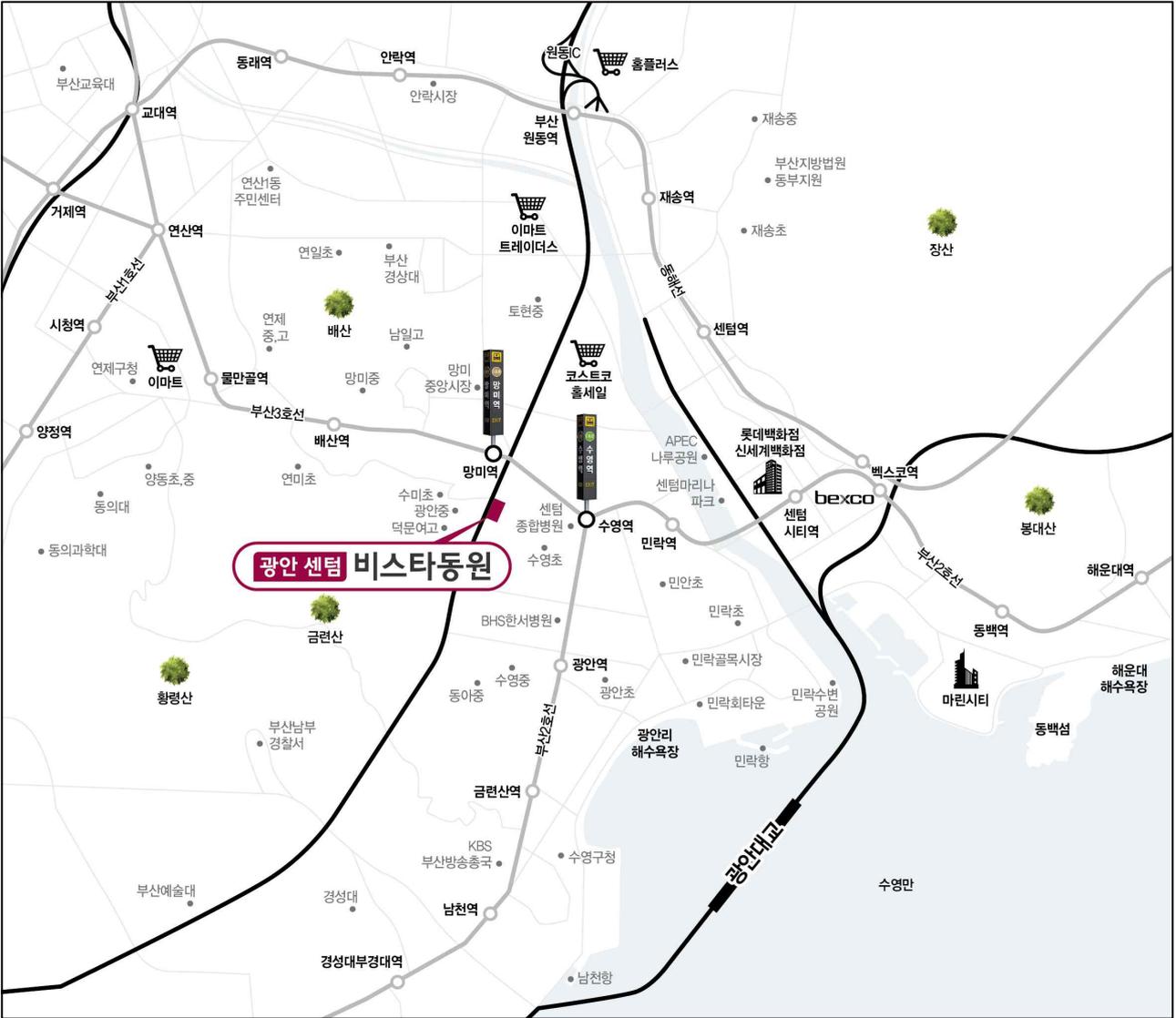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는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은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을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 착오로 인한 잘못된 청약의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대상자 여부 및 동호수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기간, 기타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된 사항 검수 또는 확인 결과 신청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공급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으며,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 수가 공급 세대에 수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

※ 본 안내문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분양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분양승인) 결과에 따라 분양일정 등 관련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니,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V 분양문의 및 위치도

- 홈페이지 : <https://광안센터비스타동원.com>
- 분양문의 : 051-741-3300
- 광안센터 비스타동원 광역위치도



■ 현장 및 견본주택 약도

광안센터 비스타동원 현장	견본주택
<p>현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971</p>	<p>견본주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22</p>